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02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임미애 · 김종민 · 이광희
정혜경 · 전종덕 · 윤종오
이병진 · 최민희 · 김 윤
한창민 · 박지원 · 황운하
강경숙 · 김준형 · 염태영
차규근 · 최혁진 · 민형배
김영배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초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중선거구제를, 광역의회 선거는 지역구당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각각 지역구 의석수의 10분의 1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불비례성이 크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하여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거나 선거 때마다 의회 내 정당 구성이 극단적으로 바뀌어 안정성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갈수록 지방의회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

으며,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보다는 사실상 정당의 임명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실태는 정당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높여 일당 독점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정치의 활력을 되찾아 행정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회의 비례대표의원을 폐지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의원정수를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확대하며,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한 의원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등).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안을 제출 받은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을 한 차례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같은 조 제8항).

다. 시·도의회 의원은 선거구시·도의원과 보정시·도원으로 구성하

되, 보정시·도의원은 선거를 하지 아니함(안 제20조제2항).

라. 선거구시·도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로 선거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선거구시·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별표 2 등).

마. 보정시·도의원 의석은 시·도별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시·도의원정수(선거구시·도의원정수와 보정시·도의원정수를 합한 수)에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의석에서 해당 정당의 선거구시·도의원 당선인수를 제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190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特別市長·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選舉와 比例代表選舉區市·道議會議員(이하 “比例代表市·道議員”이라 한다)選舉”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를 “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선거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한다.

② 시·도의회의원 중 선거구시·도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하며, 보정시·도의회의원(이하 “보정시·도의원”이라 한다)은 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지역구시·도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보정시·도의원정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선거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보정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3제5항 중 “6개월”을 “7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를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선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각각 “자치군시군의원선거구”로, “2인 이상 4인 이하”

를 “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제2항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로 한다.

- ① 시·도의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 또는 합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며, 그 시·도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28조제3호 후단 중 “比例代表市·道議員”를 “시·도의원”으로, “하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이 분할·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당은 시·도별로 보정시·도의원정수 범위에서 그 소속당원을 보정시·도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49조제2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선거와 보정시·도의원”으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와 보정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 및 보정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한다.

제52조제2항 본문 중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를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보정시·도의원후보자가 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보정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및 보정시·도의원후보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의회의원”을 “의회의원”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1個所(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시·군마다 選舉事務所 1個所)”를 “1개소(선거구시·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62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후단 중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을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區”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구”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8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항제1호나목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82조의3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82조의7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91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2호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146조제2항 단서 중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를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한다.

제15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57조제4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58조제4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58조의2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78조제2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79조제4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4조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85조제2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0조의 제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자치구·시·군의원당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다수를 얻은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을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자치구·시·군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을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으로 한다.

제190조의2의 제목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선거구시·도의원당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에서”로, “당해 선거에서”를 “해당 선거구에서”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해당 선거구의 선거구시·도의원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의석정수”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선거구시

· 도의원의의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의석 배분”을 “선거구시·도의원의의석배분”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선거구시·도의원정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한다.

제1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0조의3(보정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시·도별 보정시·도의원의의석은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 시·도별 유효투표총수(각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다 합한 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보정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②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보정배분의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begin{aligned} \text{보정배분} &= \left(\frac{\text{시·도의원}}{\text{정수}} - \frac{\text{보정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의 선거}}{\text{구시·도의원 당선인수}} \right) \\ &\quad \times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 &\quad -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선거구시·도의원 당선인수} \end{aligned}$
--

③ 제2항의 득표비율은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보정시·도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보정시·도의원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 의석수	=	보정시·도의원정 수	×	제2항에 따른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보 정배분의석수
		÷		제2항에 따른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

⑤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보정시·도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보정시·도의원”으로 본다.

제191조의2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한다.

제193조제2항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4조의 제목 및 제2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의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각각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7조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198조제3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한다.

제200조제2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선거구시·도의원”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명부”로 한다.

제201조제1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207조제1항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211조제3항 전단 중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한다.

제219조제1항 중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을 “자치구·시·군의원당선인”으로,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22조제2항 중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를 “선거구시·도의원선거”로,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를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를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선거구시·도의원의석의 재배분)”로 한다.

제263조제2항 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5조 본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로 한다.

제265조의2제1항 후단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선거구시·

도의원선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도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도위원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선거구구역표(729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의원정수
서울특별시의회의원(101)		
종로구 선거구	종로구 일원	2
중구 선거구	중구 일원	2
용산구 선거구	용산구 일원	2
성동구 선거구	성동구 일원	4
광진구 선거구	광진구 일원	4
동대문구 선거구	동대문구 일원	4
중랑구 선거구	중랑구 일원	4
성북구 선거구	성북구 일원	4
강북구 선거구	강북구 일원	4
도봉구 선거구	도봉구 일원	4
노원구 선거구	노원구 일원	6
은평구 선거구	은평구 일원	4
서대문구 선거구	서대문구 일원	4
마포구 선거구	마포구 일원	4
양천구 선거구	양천구 일원	4

강서구 선거구	강서구 일원	6
구로구 선거구	구로구 일원	4
금천구 선거구	금천구 일원	2
영등포구 선거구	영등포구 일원	4
동작구 선거구	동작구 일원	4
관악구 선거구	관악구 일원	4
서초구 선거구	서초구 일원	4
강남구 선거구	강남구 일원	6
송파구 선거구	송파구 일원	6
강동구 선거구	강동구 일원	5
부산광역시의회의원(42)		
중구·영도구 선거구	중구·영도구 일원	3
서구 선거구	서구 일원	2
동구 선거구	동구 일원	2
부산진구 선거구	부산진구 일원	4
동래구 선거구	동래구 일원	3
남구 선거구	남구 일원	4
북구 선거구	북구 일원	4
해운대구 선거구	해운대구 일원	4
사하구 선거구	사하구 일원	4

금정구 선거구	금정구 일원	2
강서구 선거구	강서구 일원	2
연제구 선거구	연제구 일원	2
수영구 선거구	수영구 일원	2
사상구 선거구	사상구 일원	2
기장군 선거구	기장군 일원	2
대구광역시의회의원(29)		
중구 선거구	중구 일원	2
동구·군위군 선거구	동구·군위군 일원	5
서구 선거구	서구 일원	2
남구 선거구	남구 일원	2
북구 선거구	북구 일원	5
수성구 선거구	수성구 일원	5
달서구 선거구	달서구 일원	5
달성군 선거구	달성군 일원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36)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중구·강화군·옹진군 일원	4
동구·미추홀구 선거 구	동구·미추홀구 일원	5
연수구 선거구	연수구 일원	5
남동구 선거구	남동구 일원	6

부평구 선거구	부평구 일원	6
계양구 선거구	계양구 일원	4
서구 선거구	서구 일원	6
광주광역시의회의원(20)		
동구 선거구	동구 일원	2
서구 선거구	서구 일원	4
남구 선거구	남구 일원	3
북구 선거구	북구 일원	6
광산구 선거구	광산구 일원	5
대전광역시의회의원(19)		
동구 선거구	동구 일원	3
중구 선거구	중구 일원	3
서구 선거구	서구 일원	6
유성구 선거구	유성구 일원	4
대덕구 선거구	대덕구 일원	3
울산광역시의회의원(19)		
중구 선거구	중구 일원	4
남구 선거구	남구 일원	6
동구 선거구	동구 일원	3
북구 선거구	북구 일원	3

울주군 선거구	울주군 일원	3
경기도의회의원(141)		
수원시 제1선거구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일원	6
수원시 제2선거구	영통구, 권선구 일원	6
성남시 제1선거구	수정구, 중원구 일원	4
성남시 제2선거구	분당구 일원	4
의정부시 선거구	의정부시 일원	4
안양시 선거구	안양시 일원	6
부천시 제1선거구	부천동, 심곡동, 중동, 산동, 신중동	4
부천시 제2선거구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성곡동, 오정동	4
광명시 선거구	광명시 일원	4
평택시 선거구	평택시 일원	6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동두천시·연천군 일원	3
안산시 제1선거구	상록구 일원	4
안산시 제2선거구	단원구 일원	4
고양시 제1선거구	덕양구 일원	6
고양시 제2선거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6
과천시·의왕시 선거구	과천시·의왕시 일원	3
구리시 선거구	구리시 일원	2
남양주시 제1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 오남읍	4

남양주시 제2선거구	별내면, 별내동,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 와부읍, 조안면, 금곡동, 진건읍, 퇴계원읍	3
오산시 선거구	오산시 일원	2
시흥시 선거구	시흥시 일원	5
군포시 선거구	군포시 일원	4
하남시 선거구	하남시 일원	3
용인시 제1선거구	처인구, 수지구 일원	5
용인시 제2선거구	기흥구 일원	5
파주시 선거구	파주시 일원	5
이천시 선거구	이천시 일원	2
안성시 선거구	안성시 일원	2
김포시 선거구	김포시 일원	4
화성시 제1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반월동	4
화성시 제2선거구	봉담읍,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정남면, 우정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장안면, 새솔동, 기배동,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4
광주시 선거구	광주시 일원	4
양주시 선거구	양주시 일원	2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일원	3
여주시 선거구	여주시 일원	2
양평군 선거구	양평군 일원	2
강원도의회의원(44)		

춘천시 제1선거구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강남동,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석사동	4
춘천시 제2선거구	퇴계동, 신북읍, 동면, 북산면,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3
원주시 제1선거구	문막읍,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호저면, 무실동,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태장1동, 태장2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4
원주시 제2선거구	소초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봉산동, 행구동, 홍업면, 판부면, 신림면, 단구동, 반곡관설동	4
강릉시 선거구	강릉시 일원	5
동해시 선거구	동해시 일원	2
태백시 선거구	태백시 일원	2
속초시 선거구	속초시 일원	2
삼척시·정선군 선거구	삼척시·정선군 일원	3
홍천군 선거구	홍천군 일원	2
횡성군 선거구	횡성군 일원	2
영월군 선거구	영월군 일원	2
평창군 선거구	평창군 일원	2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선거구	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일원	4
인제군·고성군·양양군 선거구	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일원	3
충청북도의회의원(31)		
청주시 제1선거구	상당구 일원	3
청주시 제2선거구	서원구 일원	3
청주시 제3선거구	홍덕구 일원	4

청주시 제4선거구	청원구 일원	4
충주시 선거구	충주시 일원	4
제천시·단양군 선거구	제천시·단양군 일원	3
보은군·옥천군 선거구	보은군·옥천군 일원	3
영동군·괴산군 선거구	영동군·괴산군 일원	2
증평군·진천군 선거구	증평군·진천군 일원	3
음성군 선거구	음성군 일원	2
충청남도의회의원(43)		
천안시 제1선거구	동남구 일원	5
천안시 제2선거구	서북구 일원	6
공주시 선거구	공주시 일원	2
보령시 선거구	보령시 일원	2
아산시 선거구	아산시 일원	6
서산시 선거구	서산시 일원	3
논산시·계룡시 선거구	논산시·계룡시 일원	3
당진시 선거구	당진시 일원	3
금산군 선거구	금산군 일원	2
부여군·청양군 선거구	부여군·청양군 일원	3
서천군 선거구	서천군 일원	2
홍성군 선거구	홍성군 일원	2

예산군 선거구	예산군 일원	2
태안군 선거구	태안군 일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36)		
전주시 제1선거구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4
전주시 제2선거구	완산구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3
전주시 제3선거구	덕진구 일원	5
군산시 선거구	군산시 일원	4
익산시 선거구	익산시 일원	4
정읍시 선거구	정읍시 일원	2
남원시 선거구	남원시 일원	2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김제시·부안군 일원	3
완주군 선거구	완주군 일원	2
진안군·무주군 선거구	진안군·무주군 일원	2
장수군·임실군·순창군 선거구	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일원	3
고창군 선거구	고창군 일원	2
전라남도의회의원(55)		
목포시 선거구	목포시 일원	5
여수시 선거구	여수시 일원	6
순천시 제1선거구	송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 도사동, 향동, 매곡동, 삼산동, 저전동, 중앙동, 조곡동, 덕연동	4

순천시 제2선거구	왕조1동, 왕조2동, 해룡면	4
나주시 선거구	나주시 일원	3
광양시 선거구	광양시 일원	4
담양군·함평군 선거구	담양군·함평군 일원	3
곡성군·구례군 선거구	곡성군·구례군 일원	2
고흥군 선거구	고흥군 일원	2
보성군 선거구	보성군 일원	2
화순군 선거구	화순군 일원	2
장흥군·강진군 선거구	장흥군·강진군 일원	3
해남군 선거구	해남군 일원	2
영암군 선거구	영암군 일원	2
무안군 선거구	무안군 일원	2
영광군 선거구	영광군 일원	2
장성군 선거구	장성군 일원	2
완도군·진도군 선거구	완도군·진도군 일원	3
신안군 선거구	신안군 일원	2
경상북도의회의원(55)		
포항시·울릉군 제1선거구	북구 일원	5
포항시·울릉군 제2선거구	남구, 울릉군 일원	5
경주시 선거구	경주시 일원	4

김천시 선거구	김천시 일원	3
안동시 선거구	안동시 일원	3
구미시 제1선거구	송정동, 형곡1동, 형곡2동, 원평동, 선주원남동, 도량동, 지산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광평동, 공단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4
구미시 제2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산동읍, 해평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4
영주시 선거구	영주시 일원	2
영천시·청도군 선거구	영천시·청도군 일원	3
상주시 선거구	상주시 일원	2
문경시 선거구	문경시 일원	2
경산시 선거구	경산시 일원	4
의성군 선거구	의성군 일원	2
청송군·영덕군·울진 군 선거구	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일원	3
영양군·봉화군 선거구	영양군·봉화군 일원	2
고령군·성주군 선거구	고령군 일원	2
칠곡군 선거구	칠곡군 일원	2
예천군 선거구	예천군 일원	2
경상남도의회의원(58)		
창원시 제1선거구	의창구 일원	3
창원시 제2선거구	성산구	4
창원시 제3선거구	마산합포구	3
창원시 제4선거구	마산회원구	3

창원시 제5선거구	진해구	3
진주시 선거구	진주시 일원	5
통영시 선거구	통영시 일원	2
사천시 선거구	사천시 일원	2
김해시 제1선거구	생림면, 북부동, 대동면, 상동면, 삼안동, 불암동,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진영읍, 한림면	4
김해시 제2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내외동	4
밀양시·의령군 선거구	밀양시·의령군 일원	3
거제시 선거구	거제시 일원	3
양산시 선거구	양산시 일원	6
함안군 선거구	함안군 일원	2
창녕군 선거구	창녕군 일원	2
고성군 선거구	고성군 일원	2
남해군·하동군 선거구	남해군·하동군 일원	2
산청군·함양군 선거구	산청군·함양군 일원	2
거창군·합천군 선거구	거창군·합천군 일원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選舉區選舉事務를 행할 選舉管理委員會(이하 “ <u>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u> ”라 한다)는 다음 각號와 같다.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特別市長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이하 “ <u>市 · 道知事</u> ”라 한다)選舉와 <u>比例代表選舉區市 · 道議會議員</u> (이하 “ <u>比例代表市 · 道議員</u> ”이라 한다)選舉의 選舉區選舉事務는 市 · 道選舉管理委員會	2. <u>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u> (이하 “ <u>시 · 도지사</u> ”라 한다)선거----- ----- -----
3. <u>地域選舉區國會議員</u> (이하 “ <u>地域區國會議員</u> ”이라 한다)選舉, <u>지역선거구시 · 도의회 의원</u> (이하 “ <u>지역구시 · 도의원</u> ”이라 한다)선거, <u>지역선거구자치구 · 시 · 군의회 의원</u> (이하 “ <u>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u> ”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 · 시 · 군의	3. ----- ----- ----- <u>선거구시 · 도의회의원</u> (이하 “ <u>선거구시 · 도의원</u> ”이라 한다)선거, <u>자치구 · 시 · 군의회의원</u> (이하 “ <u>자치구 · 시 · 군의원</u> ”이라 한다)선거----- ----- -----

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
구·시·군의원”이라 한다)
선거 및 自治區의 區廳長·
市長·郡守(이하 “自治區·
市·郡의 長”이라 한다)選舉
의 選舉區選舉事務는 그 選
舉區域을 관할하는 區·市·
郡選舉管理委員會[第29條(地
方議會議員의 增員選舉)第3
項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법」 第2條(設置)第6項의 規
定에 의하여 選舉區選舉事務
를 행할 區·市·郡選舉管理
委員會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區·市·郡
選舉管理委員會를 말한다]

② ~ ⑥ (생략)

第20條(選舉區) ① (생략)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
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 地域區國會議員, 지역구지방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20條(選舉區) ① (현행과 같
음)

② 시·도의회의원 중 선거구
시·도의원은 해당 시·도의
선거구를 단위로 선거하며, 보
정시·도의회의원(이하 “보정
시·도의원”이라 한다)은 선거
를 하지 아니한다.

③ -----자치구·

④ (생략)

①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② · ③ (생략)

④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地域區市・道議員定數의 100分の 10으로 한다. 이 경우 端數는 1로 본다. 다만, 算定된 比例代表市・道議員定數가 3人 미만인 때에는 3人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생략)

②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 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하여 임기만료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정시·도의원정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선거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보정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9인-----.

<삭 제>

제24조의3(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시·도의회가 자치구·시·
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
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7개월-----
-----.

⑥ 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선
거구획정안이 제26조제2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자치구·시·군선거구획
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
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
만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치구·시·군선거구획정위원
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
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
안을 마련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자치구·시·
군의원선거구-----
-----선거
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⑨ · ⑩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市·道議會議員地域選舉區(이하 “市·道議員地域區”라 한다)는 人口·行政區域·地勢·交通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自治區·市·郡(하나의 自治區·市·郡이 2 이상의 國會議員地域區로 된 경우에는 國會議員地域區를 말하며, 行政區域의 변경으로 國會議員地域區와 行政區域이 合致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行政區域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劃定하되, 하나의 市·道議員地域區에서 選出할 地域區市·道議員定數는 1명으로 하며, 그 市·道議員地域區의 명칭과 管轄區域은 別表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第26條(地方議會議員選舉區의 劃定) ① 시·도의회의원선거구는 시·도의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 또는 합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에서 선출할 시·도의원정수는 2명 이상 6명 이하로 하며, 그 시·도의원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3명 이상
5명 이하-----자치구·

자치구 · 시 · 군의원지역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
·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劃定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分割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
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議의 議員
定數의 調整 등) 人口의 增減
또는 行政區域의 변경에 따라
地方議會議의 議員定數・選舉區
또는 그 區域의 변경이 있더라
도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舉를

시·군의원선거구-----
-----.

③ 제2항에 따라 자치구·시·
군의원선거구-----

-----자치구·시·군의원선
거구-----.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는 하나의 시·도의원선거구--
-----.

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議의 議員
定數의 調整 등) -----

실시할 때까지는 그 增減된 選舉區의 選舉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區域變更이나 設置・廢止・分割 또는 合併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당해 地方議會의 議員定數를 調整하고, 第3號 但書・第5號 또는 第6號의 경우에는 增員選舉를 실시한다.

1. 2. (생략)

3. 하나의 地方自治團體가 分割되어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設置된 때에는 중전의 地方議會議員은 候補者登錄당시의 選舉區를 관할하게 되는 地方自治團體의 地方議會議員으로 되어 殘任期間 在任하며, 그 殘任期間에는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在職議員數를 각각 議員定數로 한다. 이 경우 比例代表市・道議員은 당해 市・道가 分割・設置된 날부터 14日 이내에 자신이 속할 市・道議會를 선택하여

1. 2. (현행과 같음)

3. -----

-----시・도의원-----

당해 市・道議會에 書面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자
 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
 치구・시・군이 분할・설치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
 이 속할 자치구・시・군의회
 를 선택하여 당해 자치구・
 시・군의회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在職議員
 數가 第22條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새로운 議員定
 數의 3分の 2에 미달하는 때
 에는 議員定數에 미달하는
 數만큼의 增員選舉를 실시한
 다.

4. ~ 6. (생략)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
 시・군의 장은 候補者[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
 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
 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
 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
 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

 -----한다. -----

 -----.

4. ~ 6. (현행과 같음)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

 -----선거구시・
도의원후보자-----

 ----선거구시・도의원선거----

舉連絡所長の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舉人名簿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政黨은 선거에 있어 選舉區別로 選舉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所屬黨員을 候補者(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시·도의원선거-----

-----.

④ -----
-----자치구·

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 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

시·군의원선거-----

⑤ -----자치

지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

시·군의원선거-----

⑥ 정당은 시·도별로 보정시

·도의원정수 범위에서 그 소

속당원을 보정시·도의원후보

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

-----선거구시

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者는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候補者登録申請開始日 전 5日(大統領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録申請開始日 전 30日, 大統領의 闕位로 인한 選舉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日)부터 檢印하여 교부하는 推薦狀을 사용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權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2. (생략)

3. 地域區市·道議員選舉

100人 이상 200人 이하

4. (생략)

5.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人 이상 100人 이하. 다만, 人口 1千人 미만의 選舉區에 있어서는 30人 이상 50人

· 도의원선거

②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5.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이하

③ ~ ⑤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생략)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와 보정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선거와 보정시·도의원-----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와 보정시·도의원후보자-----

-----.

③ ~ ⑮ (생략)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政黨은 候補者 登錄후에는 登錄된 候補者에 대한 추천을 取消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順位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登錄期間 중 政黨推薦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所屬政黨의 除名이나 中央黨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외의 사유로 인하여 登錄이 無效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順位는 이미 登錄된 者의 다음으로 한다.

② (생략)

제52조(등록무효) ① (생략)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③ ~ ⑮ (현행과 같음)

第50條(候補者推薦의 取消와 변경의 금지) ① -----

-----선거구시·도의원후
보자명부 및 보정시·도의원후
보자명부-----

-----.

-----.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
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
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
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
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
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
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
·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
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
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④ (생략)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
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
다.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
---. <단서 삭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u>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u> 2. ~ 4. (생략) ③ ~ ⑤ (생략)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u>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u>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 다. (생략) 2. <u>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 ② ~ ⑤ (생략)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u>	1. <u>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보정시·도의원후보자가 되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57條(寄託金の 반환 등) ① -- ----- ----- ----- ----- ----- -----. 1. ----- -----<u>자치구·시·군의원선거</u>-----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u>선거구시·도의원선거, 보정시·도의원후보자</u>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 -----<u>선거구시</u>
--	--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
 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
 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
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
 의 선거

② ~ ⑫ (생략)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號
 에 따라 選舉事務所와 선거연
 락소를,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
 소를, 정당은 중앙당 및 시·도
 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
 각 1개씩을 설치할 수 있다.

·도의원선거 및 보정시·도의
원후보자-----

1. 2. (현행과 같음)

3. 자치구·시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4. -----의회의원-----

② ~ ⑫ (현행과 같음)

第61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①

 -----.

1. · 2. (생 략) 3. <u>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 政黨이 設置하되, 選舉事務所 1個所(比例代表市 · 道議員選舉의 경우에는 比例代表市 · 道議員候補者名簿를 제출한 시 · 도마다,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비례대표자치구 · 시 · 군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자치구 · 시 · 군마다 選舉事務所 1個所) 4. <u>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u> 候補者가 設置하되, 당해 選舉區안에 選舉事務所 1個所 5. · 6. (생 략) ② ~ ⑦ (생 략)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생 략) ② 選舉事務長 또는 選舉連絡所長은 選舉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選舉運動을 할 수 있는 者중에서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舉事務員(제1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선거구시 · 도의원선거----- --1개소(선거구시 · 도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구시 · 도의원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시 · 도마다 선거사무소 1개소) 4. <u>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u>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62條(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1. ~ 3. (생략)

4. 地域區市・道議員選舉

選舉事務所에 10人 이내

5.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選舉事務所에 당해 市・道
안의 區・市・郡의 數(算定한
數가 20 미만인 때에는 20人)
이내

6. (생략)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
・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 ~ ⑧ (생략)

제64조(선거벽보) ① 選舉運動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候補者
의 寫眞(候補者만의 寫眞을 말
한다)・姓名・記號(제150조에
따라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
한다. 이하 같다)・政黨推薦候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선거구시・도의원선거

6. (현행과 같음)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삭 제>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64조(선거벽보) ① -----

補者의 所屬政黨名(無所屬候補者는 “無所屬”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正規學歷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卒業 또는 修了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 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正規學歷에 준하는 外國의 敎育課程을 履修한 學歷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敎育課程名과 修學期間 및 學位를 취득한 때의 取得學位名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外國의 敎育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政見 및 所屬政黨의 政綱・정책 그 밖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單을, 地域區市・道議員選舉에 있어서는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시・도의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候補者외의 者の 人物寫眞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洞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邑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面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比率을 한도로 작성·첨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貼付場所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명에 1매의 比率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

원후보자 명단을-----

-----.

② -----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

감일 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거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거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③ ~ ⑫ (생략)

제65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¹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illegible]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
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
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 5. (생략)

⑨ ~ ⑭ (생략)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
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
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
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
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
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
· 면 · 동 수의 2배 이내의 현
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 · 정
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
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에 의하여 選

-----.

-----.

1. ~ 5. (현행과 같음)

⑨ ~ ⑭ (현행과 같음)

제67조(현수막) ① -----
-----선거구시
· 도의원후보자-----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學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 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 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 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u>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u> 政黨別로 <u>比例代表市・道議</u> <u>員選舉區</u>마다 당해 選舉의 候 補者중에서 選任된 代表 1人이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 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 디오 放送別 각 1回 5. (생 략) ② ~ ⑬ (생 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 의 放送) ① 텔레비전 및 라디 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 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 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 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 의한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외 에 選舉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자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 ----- ----- ----- ----- ----- 1. 1. ~ 3. (현행과 같음) 4. <u>선거구시・도의원선거</u> -----<u>선거구시・</u> <u>도의원선거구</u>----- ----- ----- ----- ----- 5.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 의 放送) ① ----- ----- ----- ----- ----- ----- ----- ----- -----
---	---

위하여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
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
黨이 당해 選舉의 候補者중에
서 선임한 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演說을 放
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
送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
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政
黨 또는 候補者가 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 ④ (생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
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
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
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선거구시·도의원선
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담) ① -----
-----선거구시·도의원
후보자-----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개장소에서의 演說・對談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

1. 2. (생략)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④ ~ ⑫ (생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생략)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생략)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자치구·시·군의원선거-----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1. (현행과 같음)

2.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후보자-----

-----사람-----

상

③ (생략)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가. (생략)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생략)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나. (생략)

3. (생략)

⑤ ~ ⑭ (생략)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선거구시
·도의원선거-----

다. (현행과 같음)

2. -----선
거구시·도의원선거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후보자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
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
다)를 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 ③ (생략)

④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제3항 단
서에 따른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수 이내에서 관할선
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선박에 제64
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
공보 및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를 부착하여 운행하거나 운행
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3. 地域區市·道議員選舉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거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

①

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1. ~ 3. (생략)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생략)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생략)

② ~ ④ (생략)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선거구시·도의원선거

6. (현행과 같음)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삭 제>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illegible]

1. -----
-----자치구 · 시 · 군의원선
거-----

가. · 나. (현행과 같음)

2. -----선
거구시·도의원선거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
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
다.

1. (생략)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시
·도지사선거의선거사무장,대
통령선거의시·도선거연락소
장:14만원 이내

3. (생략)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및자치
구·시·군의원선거의선거사
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
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선
거연락소장: 10만원이내

5.·6. (생략)

③ ~ ⑤ (생략)

第146條(選舉方法) ① (생략)

② 投票는 직접 또는 郵便으로
하되, 1人 1票로 한다. 다만, 국
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

-----.

1. (현행과 같음)

2. 선거구시·도의원선거-----

3. (현행과 같음)

4. 자치구·시·군의원선거-----

5.·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第146條(選舉方法)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③ (생략)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投票用紙에는 候補者의 記號・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 및 姓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無所屬候補者는 候補者의 政黨推薦候補者의 所屬政黨名の 欄에 “無所屬”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3항의 경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생략)

구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③ (현행과 같음)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掲載順位 등) ① -----

-----.

-----선거구시
· 도의원선거-----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⑤ ~ ⑩ (생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③ (생략)

④ 選舉人は 投票用紙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投票用紙
에 1인의 候補者(비례대표국회
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政黨을 말한다)를 選擇하여 投
票用紙의 해당欄에 記票한 후
그 자리에서 記票內容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
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投票
函에 넣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생략)

④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
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

2. -----

-----선거구시·

도의원선거-----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선거구시·도의원선

거-----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사전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선거구

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58조의2(거소투표)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생략)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58조의2(거소투표)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제178조(개표의 진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에서는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후보자별 득표수(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에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④ · ⑤ (생략)

제179조(무효투표)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投票는 無效로 하지

-----.

③ -----
-----선거구시·도의
원선거-----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9조(무효투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아니한다.

1. (생략)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
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 ~ 10. (생략)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開票가
끝난 때에는 投票區別로 開票
한 投票紙를 有效・無效로 구
분하고, 有效投票紙는 다시 候
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를 추천한 政
黨을 말한다)別로 구분하여 각
각 포장하여 구·시·군선거관
리위원회 위원장이 封印하여야
한다.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
록의 작성 등) ① (생략)

② 第1項의 開票錄을 송부받은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候補者(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政黨

-----.

1. (현행과 같음)

2. -----
-----선거구시·도의원선
거-----

3. ~ 10. (현행과 같음)

第184條(投票紙의 구분)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제185조(개표록·집계록 및 선거
록의 작성 등) ① (현행과 같
음)

② -----

-----선거구시·도
의원선거-----

을 말한다)別 得票數를 計算・公表하고 選舉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舉에 있어서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당해 選舉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② (생략)

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

-----.

③ ~ ⑥ (현행과 같음)

第190條(자치구・시・군의원당선

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자치구・시・군의원-----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자치구・시・군의원-----

· 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舉區”로 본다.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

 -----.

제190조의2(선거구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에서-----

 -----해당 선거구에서-----해당 선거구의 선거구시·도의원정수-----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 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

②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

<삭 제>.

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

③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선거구시·도의원의석정수-----

 -----선거구시
 ·도의원의석정수-----

 --선거구시·도의원의석-----

 -----선거구시·도의원의석배분-----

 -----선거구시·

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신 설>

도의원정수-----

-----.

④ -----

-----선거구
시·도의원-----
-----.

-----“선거구시·도의원”-----.

제190조의3(보정시·도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시·도별 보정시·도원의의석은 선거구시·도의원선거에서 시·도별 유효투표총수(각 선거구의 유효투표총수를 다 합한 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보정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②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보정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으로 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begin{aligned} \text{보정 배분의석수} &= \left(\begin{array}{l} \text{시·도의원 정수} \\ \text{시·도의원 당선인수} \end{array} - \begin{array}{l} \text{보정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의 선거구 시·도의원 당선인수} \end{array} \right) \\ &\quad \times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 \\ &\quad - \text{해당 보정의석할당정당의 선거구시·도의원 당선인수} \end{aligned}$$

③ 제2항의 득표비율은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보정시·도의원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조정된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보정의석할당정당의

보정시·도의원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rray}{lcl} \text{보정} & & \\ \text{조정} & \text{시} \cdot & \text{제2항에 따른 보정의석} \\ \text{의석} & = & \text{도의원정} \times \text{할당정당의 보정배분의} \\ \text{수} & & \text{석수} \\ & & \div \text{제2항에 따른 각 보정의석할당} \\ & & \text{정당의 보정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rray}$$

⑤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보정시·도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보정시·도의원”으로 본다.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생략)

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第192條(被選舉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 ② (현행과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1. 2. (생략)

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 (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第136條(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規定에 불구하고 退職된다. 다만, 比例代表國會議員이 國會議長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規定에 의하여 黨籍을 이탈한 경

같은)

③ -----

-----.

1. 2. (현행과 같음)

3. -----선거
구시·도의원-----

④ -----선거
구시·도의원-----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생략)

②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中央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을 하는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선거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의,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의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생략)

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

-----.

⑤ (현행과 같음)

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거구시·도의원선거----

-----.

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선거구시·도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

④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비례代表國會議員選舉 또는 비례

④ _____ 선거

③ 第1項의 再選舉를 실시함에 있어서 政黨이 合黨한 경우 合黨된 政黨은 그 再選舉의 選舉期間開始日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合黨전 候補者중 1人을 候補者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③ _____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
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합黨된 政黨의 候補者(비례
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
다)의 기호는 당초 選舉 당시
의 그 候補者の 記號로 한다.

⑥ (생략)

⑦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
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
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
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89조제
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90
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석을

-----선거구시·도의원선
거-----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구시
·도의원선거-----

⑥ (현행과 같음)

⑦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재배분하고, 그 재배분에서 제외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 ・ ② (생략)

③ 第1項의 再投票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이 있는 경우 제194조의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議席再配分을 위한 得票數의 計算은 그 候補者의 합당전 政黨의 得票數에 合算한다.

④ ・ ⑤ (생략)

第200條(補闕選舉) ① (생략)

② 比例代表國會議員 및 비례

선거구시・도의원

⑧ 선거구시・도의원선거

⑨ (현행과 같음)

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선거구시・도의원

④ ・ ⑤ (현행과 같음)

第200條(補闕選舉) ① (현행과 같음)

② 선거구

대표지방의회의원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闕員通知를 받은 후 10日 이내에 그 闕員된 議員이 그 選舉 당시에 소속한 政黨의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闕員된 國會議員 및 지방의회의원의 議席을 承繼할 者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補闕選舉 등(大統領選舉 · 比例代表國會議員選舉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이項에서 같다)은 그 選舉日부터 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미만이거나,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の 1 이상이 闕員(任期滿了日까지의 기간이 1年 이상인 때에 再選舉 · 延期된 選舉 또는 再投票事由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地

시 · 도의원

선거구

· 도의원후보자명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① 선거구
시 · 도의원선거

方議會의 議員定數의 4分の 1
이상이 闕員되어 補闕選舉 등
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闕員된
議員 全員에 대하여 실시하여
야 한다.

② ~ ⑦ (생략)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 同時選舉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
이상의 候補者(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候補者
를 추천한 政黨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選舉事
務所와 選舉連絡所를 공동으로
設置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
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를 추천한 政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5조(선거

-----.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205條(選舉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舉事務關係者の 選任에 관한
特例) ① -----

-----선거구시·도의원
선거-----

-----.

② ~ ⑤ (현행과 같음)

第207條(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① -----

-----선거구시·도의원선
거-----

공보)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동으로 작성한 때에는 후보자마다 각각 1종을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략)

제211조(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동시선거에 있어서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地方議會
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
舉에 있어서 選舉의 效力에 관
하여 異議가 있는 選舉人·政

자치구 · 시 · 군의원선거

선거구시 · 도의원선거

[illegible]

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 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區・市・郡議員選舉 및 자치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市・道選舉管理委員會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第222條(選舉訴訟) ① (생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에 있어서 選舉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222條(選舉訴訟) ① (현행과 같음)

② -----

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舉 및 市·道知事選舉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舉, 自治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에 있어서는 그 選舉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생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

-----선거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③ (현행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

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第263條(選舉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① (생략)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
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하

벌칙)제1항 또는 제2항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선거구시 · 도의원후
보자

第265條(選舉事務長등의 選舉犯
罪로 인한 當選無效)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se lines are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by tracing or writing between the lines. The entire page is white, and there is no other text or graphics present.

선거구시 · 도의원후보자

제265조의2(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① -----

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u>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② ~ ⑤ (생략)	----- -----. ----- ----- -----<u>선거구시·도의원</u> <u>선거</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